



법원 최종판결 알림

2019. 8. 14.

얼바인침례교회(이하, “본교회”)는 권남혁(David Kwon) 목사 및 그를 담임목사로 추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분열을 조장한 교회분리파(이하, “분리파”)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, 45년 역사상 가장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.

그러나, 법원은 오늘 아래와 같이 분리파들의 주장을 기각하였고, 그들의 주장과 행동이 불법임을 확인하면서 최종판결(Final Statement of Decision)을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.

법원이 선고한 판결 내용은 무엇인가 ?

- 1 권남혁 목사는 본인이 담임목사 대행이라고 주장하며 해임에 불복하였으나, 법원은 권남혁 목사에 대한 해임절차는 정당했고, 권남혁 목사는 2019. 3. 15.자 이후 본교회와 고용관계는 종료 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.
- 2 권남혁 목사는 본인을 해임한 안수집사회 결정에 보복하기 위해, 불법적으로 제직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3명의 시무안수집사들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, 임시가처분(TRO)을 제기하여 교회행정을 2달여 동안 마비시켰으나, 법원은 3명의 시무안수집사에 대한 해임절차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
- 3 따라서, 본교회의 이사(안수집사회)는 김진홍, 구연성, 신수연 시무안수집사로 구성되는게 정당하고, 분리파가 주장하는 권남혁, 이복섭, 권혁중, 이성호, 이일권, 신영조는 본교회의 이사로 적법하게 임명되거나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, 따라서 본교회의 이사로서 권한이 없다.

☞ 자세한 내용은 법원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합니다. (Case No. 30-2019-01076323-CU-NP-CJC)

법원의 결정은 교회의 모든 행정권이 안수집사회에 있음을 확인해 준 것 입니다.

얼바인침례교회
안 수 집 사 회

